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 영 준**

차 례

- I. 서론
- II. 보험에 의한 환경오염손해의 담보방법
- III.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IV. 결론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여부

【국문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가능케 했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가져왔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화학약품의 사용은 수많은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복구 비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 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사고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우선적으로는 오염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피해자들을 합리적으로 구제·보상하고 피해환경을 조속히 복구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피해보상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사고는 디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비하여 사고를 유발한 기해자의 재정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사고발생시 기해자가 피해자 보상과 피해환경의 복구를 책임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때문에 환경오염

* 이 논문은 2009.12.12.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98회 학술대회(녹색기업을 위한 법적 과제)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입니다. 당시 토론회주신 최문희 교수님(강원대)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사고시 가해자의 배상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배상책임보험(CGL)에 오염사고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배상책임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뿐 “점진적인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오염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오염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보험담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인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관련법 등과 연결되어 강제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의 입법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서 추진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5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각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모두 입법안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09년 4월 14일 금융감독원은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장기 과제로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성질과 법적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후 미국, 독일, 일본에서의 관련논의 및 입법과정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화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I. 서 론

산업혁명 아래로 고도화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인류에게 수많은 편리함과 윤택한 생활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에 의한 부

작용 또한 점증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화학약품의 사용은 수많은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복구비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사고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오염사고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피해자들을 합리적으로 구제·보상하고 피해환경을 조속히 복구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빠른 산업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로 인정 받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개발중심주의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사고는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모두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성숙화 되면서 점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0년대 말의 온산공단 증금속오염사고와 1991년 낙동강 폐놀유출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도 산업발전에 부수한 환경피해를 피해갈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복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사고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비하여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재정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환경의 복구를 책임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때문에 환경오염사고에 의한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배상책임보험(CGL)에 오염사고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배상책임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뿐 “점진적인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오염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오염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보험담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인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기본법 등과 연결되어 강제보험화 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발전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만성적인 지구생태계의 변화를 막고 더 늦기 전에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파괴방지협약,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등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기업에게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기업은 향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녹색기업'으로의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동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써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서 추진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¹⁾ 또한 2005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각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모두 입법안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09년 4월 14일 금융감독원은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녹색증권보험,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 개인용 자전거전용보험 등을 2009년 중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하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과 함께 장기 과제로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다.²⁾

아래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미국, 독일, 일본에서의 관련논의 및 입법과정을 비교설명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게 엄격책임을 부담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장에게는 강제적인 책임보험(환경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기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은 2000년 12월 김원길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폐기되었다.

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정례브리핑 자료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2009. 4. 15. 8면 참조.

II. 보험에 의한 환경오염손해의 담보방법

1. 개설

환경오염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에서 면책사유로 되어있는 오염사고를 부보하는 특별약관을 붙여서 보험담보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문약관으로는 종합배상책임보험약관(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CGL 약관)에 특별약관으로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을 붙여서 담보하고 있고, 국문약관으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오염사고에 관한 독자적인 보험약관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Policy: EIL 약관)을 사용하여 오염사고를 부보하는 방법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에 의한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이에 의한 보험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배상책임보험(CGL)에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한 방법에 의하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sudden & accidental events)”에 의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에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에 의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인 오염사고(gradual pollution)”의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를 상술하기로 한다.

2.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담보

가. 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 각국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통약관인 배상책임보험에 오염손해를 담보하는 특별약관을 붙여서 보험담보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를 물론이고 미국, 독일, 일본 등도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영문약관인 종합배상책임보험(CGL 약관)에 특별약관으로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을 붙여서 담보하는 방법과 국문약관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나. 종합배상책임보험(CGL 약관)의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

(1) 종합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영문약관인 종합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CGL 약관)은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에게 ①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A), ②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담보B), ③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의료비(담보C)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계약이다. 종합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다양한 배상책임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담보를 제공한다.

(2)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의 의의

종합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담보A에 공해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CGL 담보A 제2조 바).

제2조[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바.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화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애」나 「재

물손해」

- (가)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나)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다)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³⁾

3) CGL §2. [Exclusions]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 f. (1)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actual, alleged or threatened discharge, dispersal, release or escape of pollutants:
(a) At or from premises you own, rent or occupy;
(b)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used by or for you or others for the handling, storage, disposal, processing or treatment of waste;
(c) Which are at any time transported, handled, stored, treated, disposed of, or processed as waste by or for you or any person or organization for whom you may be legally responsible; or
(d)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 if the pollutants are brought on or to the site or location in connection with

위와 같은 면책조항 때문에 환경오염손해의 경우에는 종합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으로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을 붙여서 환경오염손해도 보험으로서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오염사고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II)⁴⁾ : 제1장 담보 「A」의 면책조항 「바」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⁵⁾

(3) 보험사고

종합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하는데 이러한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occurrence)”에 기인 된 것이어야 한다.⁶⁾ 이때의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계속~~
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한다(종합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제5장 제9조).⁷⁾ 즉, 종합배

-
- such operations; or
- (ii) if the operations are to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the pollutants.
- (2) any loss, cost, or expense arising out of any governmental direction or request that you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pollutants.
- Pollutants means any solid, liquid, gaseous or thermal irritant or contaminant including smoke, vapor, soot, fumes, acids, alkalis, chemicals and waste. Waste includes materials to be recycled, reconditioned or reclaimed.
- 4) 참고로 오염사고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I)은 “제1장 담보 「A」의 면책조항 「마」의 (1)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애”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5) “Exclusion f. of coverage A (section I) does not apply.”
- 6) CGL 제1장 담보A. 제1조 가항 : This insurance applies only to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which occurs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must be caused by an “occurrence”. The “occurrence” must take place in the “coverage territory.”
- 7) CGL 제5장 제9조 : “Occurrence” means an accident, including continuous or repeated exposure to substantially the same general harmful conditions.

상책임보험의 법적 성질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데 그 사고가 금격한 것인 경우는 물론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⁸⁾

(4) 보험금 지급의 기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방식으로 되어있어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1)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의의

국문약관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인해 생긴 사고 또는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일으켜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계약이다.

(2)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의 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그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피보험자가 부보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화된 특별약관을 첨부함으로써 구체적인 보험사고와 면책사유가 확정되는 독특한 약관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상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좁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여러 특별약관들과는 달리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은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독특한 특별약관이다.

8) 미국에서는 CGL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다만, ①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②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동 특별약관 제2조).

(3) 보험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도 종합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성질도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단지 앞서 설명하였듯이 “급격한 사고”의 경우에만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지고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종합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4) 보험금 지급의 기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종합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방식으로 되어있어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담보

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의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 EIL 보험)

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제3자에 대한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소송비용, 정화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앞서 설명한 기준의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환경과 관련된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방식의 보험이 아닌 환경오염손해 자체를 독립하여 하나의 약관으로 만든 보험계약이다.

이 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에 의한 보험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환경오염의 성격은 크게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Sudden and Accidental Pollution)” 및 “점진적 오염(Gradual Pollu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보았듯이 영문약관인 종합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문약관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급격한 사고”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지고 오염 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점진적 오염(Gradual Pollution)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손해에 대한 부보가 가능해 진다

한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환경오염(Environmental Impairmen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 제3조).

제3조 정의

1. 환경오염

- (a) 토지, 대기, 수로 또는 水 자체로의 액체, 고체, 기체 또는 열자극제, 오염 물의 방출, 배출, 처분, 분산, 삼투, 누출 또는 유출

- (b) 냄새, 소음, 진동, 빛, 전기, 방사능, 열의 변화 또는 다른 감각현상의 유발. 그러나 화재 또는 폭발은 제외⁹⁾)

종합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규정된 “보험사고”라는 매우 광범위한 용어와는 대조적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책임이 부과되는 손해는 오염, 생활침해 또는 생활침해유사효과들을 포함하는 보다 좁은 범위의 활동들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피담보사고는 종합배상책임보험약관의 피담보사고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종합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방식이 아닌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방식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 강제보험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이를 도입한 나라 중 일부에서 강제적인 의무보험의 일종으로 입법화 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피보험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종합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개별국가

9)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Policy

III. Definitions :

1. Environmental Impairment is defined as (a) the emission, discharge, dispersal, disposal, seepage, release or escape of any liquid, solid, gaseous or thermal irritant, contaminant or pollutant into or upon land, the atmosphere or any watercourse or body of water; (b) the generation of smell, noises, vibrations, light, electricity, radiation, changes in temperature or any other sensory phenomena but not fire or explosion.

들의 강제보험화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I.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가.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 관련 법·제도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이 설립되었다. 판례법 중심인 미국법의 특색에 따라 미국의 환경관련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많은 환경관련 소송에서 축적된 판례에 따라 형성되었다. 한편 보다 정리된 환경관련 규정의 필요성 때문에 1970년대에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과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이 제정되었다. 또한 과거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그 비용에 관한 책임을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1980년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과 현재와 향후 유해폐기물처리를 규율하기 위해 1976년 「자원보전 및 회복법(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등의 제정법을 입법하였다.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ERCLA)」과 「자원보전 및 회복법(RCRA)」의 도입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 1980년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ERCLA)

1980년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속칭 Superfund Act 라고도 한다)」은 과거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이후 유해폐기물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현장정화작업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환경보호청(EPA)은 유해폐기물 현장 중 가장 심각한 환경피해 정화대상을 목록화

하여 전국우선순위목록(National Priority List: NPL)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정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 기금인 슈퍼펀드(Superfund)가 창설되었고, 슈퍼펀드에 대한 기금은 세금과 잠재적 책임당사자(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PRP)의 비용부담으로 조성된다. 잠재적 책임당사자는 유해폐기물 현장의 현재 또는 과거의 소유자와 운영자, 생산자, 운반자가 포함된다. 정부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잠재적 책임당사자로 지명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전국우선순위목록(NPL)에 등재된 지점에 대해서 우선 슈퍼펀드의 기금에 의하여 먼저 오염정화작업을 개시하고 이후 해당지점의 오염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 등을 잠재적 책임당사자로 지정하여 그에게 오염정화비용을 구상하게 된다. 이때 환경보호청은 잠재적 책임당사자에 대해서 유해폐기물의 폐기와 관련된 부주의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당사자가 정화가 필요한 유해물의 폐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그것으로 족하도록 입법하였다. 즉, 잠재적 책임당사자에게 유해폐기물 오염에 대해서 엄격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ERCLA)에 의한 잠재적 책임당사자의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험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적인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고안되어 도입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1976년 자원보전 및 회복법(RCRA)

1976년 「자원보전 및 회복법(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은 현재와 향후 유해폐기물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즉 현재와 향후의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통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유해폐기물의 생산자와 운송자, 유해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폐기물관리요건을 부과한다. 또한 잠재적 당사자에게는 오염 물질배출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시설폐쇄 후 소요될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

능력을 요구한다.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생산자와 운송자, 유해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 시설운영자들은 재정적 증명을 위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계약체결한 후 이에 근거하여 재정능력을 보여주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1) 도입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환경오염손해와 관련한 책임에 대하여는 종합배상책임보험(CGL 약관)에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을 첨부하여 보험보장을 받았었다. 그러나 종합배상책임보험에서 점진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담보를 제외시켜서 급격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해지자 1980년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ERCLA)과 1976년 자원보전 및 회복법(RCRA)에 의해 재정증명을 요구받게 된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일부 보험회사들이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을 전문적으로 담보하는 독립적인 보험상품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EIL)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후반에 미국 보험감독원(Insurance Service Office : ISO)에서 오염책임보험(Pollution Liability insurance)라는 표준약관을 공표하였다. 오염책임보험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 대부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였지만 담보용어와 담보의 정도는 많은 경우에 있어 상이하다. 그렇지만 양보험 모두 급격하고 우연한 환경오염사고와 함께 점차적인 환경오염사고도 담보하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둑어서 함께 고찰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유형

시장경제체제인 미국 보험시장의 특성 때문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환경보호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등 다양한 유사보험상품

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름이 같더라도 개별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보험의 구체적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⁰⁾

현재 미국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기본약관이 약 25종 이상 통용되고 있으며 그 외 성격이 다른 환경오염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변형약관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약 100종의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형적인 비표준약관(manuscript policy)보험시장인 셈이다.¹¹⁾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요 약관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¹²⁾

- ① 특정지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Site specific EIL)
- ② 시공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Contractors EIL)
- ③ 지하 및 지상 저장탱크보험 (Underground and above-ground storage tank)
- ④ 석면 및 납 제거작업 시공사 배상책임보험(Asbestos and lead abatement contractors liability)
- ⑤ 환경복원보험 (Environmental remediation insurance)
- ⑥ 환경복원조과비용보험 (Remediation stop-loss(cost cap) insurance)
- ⑦ 종합배상책임보험 및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혼합보험(combined CGL & EIL insurance)
- ⑧ 혼합형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¹³⁾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종류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통용되고 있다보니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담보내용과 조건, 면책사유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보험보장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

10) 이러한 면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랫동안 통일적인 약관형식을 사용해온 종합배상책임보험(CGL 약관)과 달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하태웅,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검토”, 「변호사」 제29집, 1999, 179면 참조.

11) 권혁대, “국내 손보사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27면.

12) 권혁대, 전계논문, 28면.

13) 혼합형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가 영위하는 특정 영업형태에 맞추어 여러 가지 담보조건을 각각 취사선택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이다. 각 계약자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자기가 원하는 담보조건만 들어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개별담보조건에 대해 이해도가 높지 않은 개별계약자들이 담보조건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시장의 부정정인 면이기도 하다.¹⁴⁾

(3)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의 특징

미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관 중 핵심적인 것은 거의 유사하다. 미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Sudden and Accidental Pollution)” 이외에 “점진적 오염(Gradual Pollution)”도 담보위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배상책임보험(CGL)과 비교할 때 보다 넓은 손해에 대한 부보가 가능해 진다.

둘째, 담보의 대상이 포괄적이지 않고 열거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별 담보를 하나씩 계약자의 취향에 맞추어 조합하는 혼합식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가능해 진다.

셋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종합배상책임보험(CGL)의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방식과 달리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방식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보험금 지급기준이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 보험기간 중에 행해진 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염손해를 입었으나 그 손해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인식된 때에는 이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 때문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연장보고기간’을 규정하여 보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를 일정기간(보통 보험기간종료 후 1년) 동안 인정해 주고 있다.

다섯째, 종합배상책임보험(CGL)약관의 용어정의와는 달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의 용어정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지향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4) 권혁대, 전계논문, 29~30면.

(4)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조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면책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가) 환경보호관련 법규의 의도적 불준수

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구성원, 조합원 또는 임원의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에 의해 공표된 적용될 수 있는 법규, 규칙, 명령, 지침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거나 그러한 불준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한 오염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상해, 재산손해 또는 환경손해는 면책된다.¹⁵⁾

(나) 알려진, 사전에 존재하는 오염

피보험자가 소유, 임대 또는 임차하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달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구내에서 기존상태를 교정하는 책임 또는 이와 관련된 비용 또는 경비에 관한 담보는 면책된다.¹⁶⁾ 왜냐하면 그러한 오염상태는 이미 피보험자에게 알려진, 사전에

15)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clusions (L) :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 to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or environmental damage arising out of a pollution incident which results from or is directly or indirectly attributable to failure to comply with any applicable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directive, or order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promulgated by any governmental body,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is a willful or deliberate act omission of (1) the insured, or (2) any named insured, or any member, partner, or executive officer thereof;”
“당 보험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보호에 관계되고 정부에 의해 공표된 적용될 수 있는 법규, 규칙, 명령, 지침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거나 그러한 불준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한 오염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상해, 재산손해 또는 환경손해. 단, 불준수는 (1) 피보험자 또는 (2) 기명피보험자, 구성원, 조합원 또는 임원의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여야 한다.”

16)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I. Exclusions.

12. : This policy shall not apply to or include “Liability for or costs or expenses of or in connection with correcting pre-existing conditions at any premises owned, leased, or rented by the Insured or for which the Insured may otherwise be responsible”

“피보험자가 소유, 임대 또는 임차하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다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구내에서의 기

존재하는 오염이기 때문이다. 이 면책규정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합적 환경대처보상책임법(CERCLA)에 의한 청구들 중 많은 경우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 수년의 기간에 걸쳐 존재하고 있던 기존 오염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 폐기물처리지점의 정화관련 비용 및 책임

담보지역 중 피보험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지점(waste disposal sites)’의 정화시에 부담하게 되는 광범위한 비용 및 책임에 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¹⁷⁾ 다만,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은 폐기물처리지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폐기물처리지점이 무엇을 지칭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고 있다.

전지점포함설은 폐기물이 처리된 지점은 어떤 지점이든지 폐기물처리지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설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의 폐기물의 “처리”라고 본다. 한편 의도적사용지점설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지점만을 폐기물처리지점으로 본다. 이 설은 비록 폐기물처리지점이라는 용어가 동 보험약관상에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책조항에서 동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동 용어는 아무 “지점”에서의 폐기물의 “처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리 보지 않을 경우 동 면책조항은 보험약관

존상을 교정하는 책임 또는 이와 관련된 비용 또는 경비에 관해서는 당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17)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clusions (i) :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or environmental damage arising out of any pollution incident emanating from a site used for the storage, disposal, processing, or treatment of any waste material, if the pollution incident occurs after the site is no longer in active use because of sealing off, abandonment, alienation, or closure, whether or not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ny statute, ordinance, directive, or order promulgated by any governmental body.”

“당 보험약관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 명령, 지침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공표된 지시의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봉입, 포기, 양도 또는 폐쇄에 의해 문제의 지점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후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의 저장, 처분, 가공 또는 처리에 대해 사용되고 있던 문제의 지점으로부터 유래된 오염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상해, 재산손해 또는 환경손해”

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을 많은 담보들을 면책으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폐기물처리지점이라는 용어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지점들만을 포함하는 것이며, 폐기물이 우연적으로 누출된 지점이나 다른 곳에서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후설에 찬동한다.

(라) 정규적인 정화작업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영업과 관련되어 정규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담보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에 관한 책임 또는 비용에 관해서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¹⁸⁾

⑤ 징벌적 손해배상금

⑥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⑦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⑧ 다른 보험계약 (예컨대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상되는 부분

2. 독일

가.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 관련 법·제도

독일에서는 스위스 바젤시 소재 Sandoz회사의 창고화재로 인한 라인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시설을

18)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I. Exclusions.

12 (b) : “any cleaning-up operations reasonably considered to be routine and normal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Insured”.

“피보험자의 영업과 관련되어 정규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화작업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에는 당 보험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으로 종래의 수질오염에 추가하여 대기와 토지오염을 포함하는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엄격책임을 채택하는 환경배상책임법(Umwelthaftungsgesetz)을 1990년 제정하여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법은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 엄격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시설의 조업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오염사고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특히 위험한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었고, 시설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등 특징이 많은 법률이다.

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1) 도입

독일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일반배상책임보험(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 für die Haftpflichtversicherung)과 연방수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을 담보대상으로 하는 수질오염책임보험(Zusatzbedingungen für die Versicherung der Haftpflicht aus Gewässerschäden), 대기와 토양에 대한 오염을 담보대상으로 하는 舊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Besondere Bedingungen für die erweiterte Versicherung von Umweltschäden im Rahmen der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 등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였다.

그러나 1990년 환경배상책임법이 제정됨으로써 대기, 토양, 수질 등 모든 분야의 환경오염에 관한 배상책임의 근거법이 통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보험업계에서는 수질오염책임보험과 구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통합하여 새로운 환경배상책임법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Besondere Bedingungen und Risikobeschreibungen für die Versicherung der Haftpflicht wegen Schäden durch Umwelteinwirkung : 흔히 줄여서 “HUK 약관”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라고 칭한다)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성립으로 기준의 수질오염책임보험과 구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일반배상책임보험도 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제조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을 제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

책임위험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환경오염에는 오로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HUK)만 적용될 수 있다.

(2)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특징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자랑했던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독일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독일 보험업계가 1990년 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 당시에 공동으로 배상책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일약관을 만들었고 이를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독일 연방보험감독청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모델밖에 없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점진적 오염의 담보

과거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산손해에 기인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오염”의 경우만 보험담보 할 수 있고, “점진적 오염(Gradual Pollution)”은 특약으로도 담보위험으로 할 수 없었다. 또한 수질오염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재산손해나 신체손해가 점진적인 오염에 의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민사책임을 담보할 수는 있었지만, 특별히 위험한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오염만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보험이 명문으로 점진적 오염에 대한 보험담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일반배상책임보험이나 수질오염책임보험보다 넓은 범위의 손해에 대한 부보가 가능해졌다. 다만, 점진적인 오염이 통상적인 조업에 의한 오염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당시의 기술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가능성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보험으로 담보된다.

(나) 육해공 전 지역에서의 오염손해를 담보

과거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연방수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은 그 담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수질오염책임보험은 오로지 연방수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지표 및 지하수의 오염에 관한 배상책임만을 담보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환경

오염배상책임보험은 대기, 토양 또는 수질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하여 담보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오염사고의 발생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서로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계약이 “환경사고에 의하여 야기된” 책임에 대해 광범위한 담보를 부여하고 있지만, 환경사고의 성질에 관하여 상세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독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은 실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오염을 담보 하지만 이를 7가지 담보요건으로 나누어 놓았다. 즉, 독일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거의 무제한으로¹⁹⁾ 담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은 7종의 별개담보요건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담보범위를 제한한다. 이 개별적 접근은 담보될 특정위험 또는 위험군을 보다 정확하게 한계를 정하며 보험이 피보험자의 특정필요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각 시설과 각 위험은 약관의 별표에 고지되어야 한다. 이 고지요건은 시설전체군에 대한 “일괄거래”를 하는 관례를 없애는 것을 돋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²⁰⁾

7종의 담보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질침해물질을 생산, 처리, 저장, 창고로의 위치, 취급, 운송하기 위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수자원법시설). 환경배상책임법 부칙1 또는 2에 열거된 수자원법 시설, 하수처리시설, 하천에 대한 오염과 하수에 기인한 피해는 배제된다.

② 환경배상책임법 부칙1에 열거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환경배상책임법시설). 하수처리시설, 하천에 대한 오염과 하수에 기인한 손해는 제외된다.

③ 환경보호규정에 따라서 허가 또는 보고요건에 따르는 시설이 만약 수자원법 또는 환경배상책임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고지가능시설). 하수처리시설, 하천에 대한 오염과 하수에 기인한 피해는 배제된다.

④ 독일 일반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1항 5호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에 기인한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또는 하천으로

19) 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성립이 있은 후 일반배상책임보험약관의 개정으로 오염손해에 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20) W.Breining, *Die Haftpflichtbranche bleibt interessant*, 21 Versicherungswirtschaft, s.1330 (1991).

운반되는 물질 또는 하천으로 지향된 물질의 유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또는 水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구성을 변경할 정도로 영향을 받은 하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하수와 하천에 대한 오염).

⑤ 환경배상책임법 부칙2에 열거된 증권소지자의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특정환경배상책임법시설에 대한 강제보험).

⑥ 담보요건 1부터 5까지에 기술된 시설들 또는 그러한 시설들을 위한 것이 명백한 부품들에 있어서, 증권소지인이 그러한 시설의 운영자 자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시설 및 부품들을 디자인, 제조, 공급, 조합, 유지 및 서비스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시설운용자가 증권소지인에 대해 손해회피비용 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약관의 제5조에 따라서 보험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⑦ 담보요건 1부터 6이 구입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담보요건 1부터 6까지의 범위내의 시설 또는 작업으로부터 약관에 기술된 위험과 관련한 환경오염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그러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²¹⁾

(다)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고현재화기준방식을 채택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방식과 달리 사고현재화기준(manifestation basis)방식으로 되어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에는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발견(nachprüfbare erste Feststellung ; verifiable first discovery)”이라는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 때문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피해자가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라) 연장보고기간(3년)의 인정

보험금 지급기준이 사고현재화기준(manifestation basis)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 보험기간 중에 행해진 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염손해를 입었으나 그 손해를 피해자가

21) 7번째 담보구성요소는 1992.7.27.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요소는 “일반 환경오염배상책임위험”이라는 범주를 포함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통적 보호망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고 보험기간을 종료하여 피해발생시에는 이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환경피해는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나서 손해가 발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험회사가 바뀐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때문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연장보고기간’을 규정하여 보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를 3년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원인체공시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되 그 액수는 그 보험총액 중 이미 지급하지 않은 잔액만으로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였다.

(마) 환경배상책임법에 의한 강제보험제도의 실시

독일의 환경배상책임법에 의한 시설소유자는 동법의 적용지역 내에서 보험업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에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의한 신탁 또는 보증, 동법의 적용지역 내에서 은행업 면허를 가진 금융기관(은행)이 책임보험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는 신탁 또는 보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동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환경배상책임법 제19조). 현실적으로는 이중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조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면책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가) 기준오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 제6조 제3항은 “보험계약의 개시시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담보로부터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면책조항은 담보의 주요한 제한이다.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발견”기준과 기준오염손해에 대한 담보에 대한 이 면책조항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개시전에 오염이 발생했을 지라도 “손해”가 보험기간중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보험계약 개시 이전에 개시된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유로 면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면책사유에 의거하여 면책을 주장하려는 보험회사는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즉 손해가 보험개시시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나) 다른 보험의 존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 제6조 제4항은 “이전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가 존재하거나 담보가 획득될 수 있는” 손해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를 배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전의 수질오염책임보험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중복되는 이중담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 하에서도 담보를 가지지만, 수질오염책임보험에 여전히 유효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의 조항들이 아니라, 이전 수질오염책임보험약관의 조항들이 수질오염책임보험약관에 따라 부보되고 있고 또는 부보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다) 의도적 유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은 의도적으로 유출되거나, 넘치거나, 방출되거나 수로를 벗어나거나, 증발 또는 토양 또는 하천으로 유입된 물질들로부터 야기되는 하천 및 토양오염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만약 유출이 “급격하고 우연한 작동의 혼란”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고관련 유출에 대하여 담보를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출은 일반적으로 면책으로 된다.

(라) 통상가동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 제6조 제2항은 통상가동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가동오염 손해는 기준규제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배출수준이다.

그런데 독일 환경배상책임법은 통상가동에 대해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규제법을 준수하고 최신기술을 사용하여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때문에 환경오염배

상책임보험약관 제6조 제2항의 통상가동 면책조항은 산업계에 막대한 책임부담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보험업계가 이러한 면책조항을 만든 이유는 그러한 통상가동에 의한 손해는 예상되는 것이고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통상가동으로 인한 손해는 경영조건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손해나 피할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손해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다만, 통상가동 면책은 단서에 의하여 “만약 피보험자가 당시의 기술적 인식상태에 비추어 손해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통상가동 오염손해를 담보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인식하지 못했음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마) 기타

① 먼지 등에 의한 손해, ② 고의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 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그 위반자에 대한 청구권, ③ 제조자로부터 요청된 기술적 지침이나 기술적 통제를 불준수자에 대한 청구권, ④ 유전공학상의 손해로 인한 청구권, 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보상요구, ⑥ 환경배상책임법상 규정된 배상한도액이 상의 책임액 등의 면책사유들이 있다.

3. 일본

가. 환경오염손해배상보험의 도입

일본에서는 1992년 6월 1일부터 일본화재, 안전화재 등 몇 개의 보험회사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종합배상책임보험약관(CGL)에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을 붙여서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보험 보통약관으로부터 독립된 오염손해만 담보하는 약관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일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특징

(1) 판매대상

일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시설’과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²⁾

① 국내에 소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을 첨부한다. 대상 시설로는 공장, 창고,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채취, 채굴시설, 해양시설, 원자력시설 등을 보험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첨부한다. 대상 작업으로는 건설, 토목공사업자, 해체업자, 공장 등의 보수, 점검, 청소업자, 배수처리, 오염정화작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청약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하탱크의 수리, 정리, 보수작업, 석면의 제거, 청소, 폐기작업은 보험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설계, 도면작성, 검사, 조사 또는 보고서작성 등의 전문직업작업은 단독으로 보험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2) 약관의 구성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종래 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독립된 약관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갖고 있다

(가) 특별약관의 내용

특별약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첨부된다.²³⁾

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이 약관은 공장, 창고, 연구소 등의 사업소에 관해서 “환경오염배상책임 보험보통약관”+“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특약조항” 형태로 사용된다.

②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국내에서 “작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이 약관은 오염지역의 정화, 복원작업, 탱크 등의 세정작업등에 관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22)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1992年) 6月 4日, p.5.

23)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1992年) 10月 8日, p.5.

보통약관”+“도급업자 특별약관”+“특약조항” 형태로 사용된다.

(나) 특약조항의 내용

특약조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첨부된다.²⁴⁾

- ① 오염정화명령의 근거법령에 관한 특약조항(자동첨부)은, 행정에 의한 오염정화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된다.
- ② 축소보상특약조항(자동첨부)은 손해보상비율을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된다.
- ③ 배상청구기간연장특약조항(자동첨부)은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불계속의 경우에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한 보험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부된다.
- ④ 소급일설정특약조항은 소급일을 설정하여 소급일 이전에 개시된 환경오염을 부담보하는 경우에 첨부된다.
- ⑤ 일정기간 경과후의 배상청구부담보 특약조항은 동일 또는 관련된 환경오염에 기인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중 최초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보하는 경우에 첨부된다.
- ⑥ 환경오염대응비용 담보특약조항은 대상시설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환경오염대응비용을 담보하는 경우에 첨부된다.

(3)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²⁵⁾

- ①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은 환경오염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장애(장애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 또는 타인의 재물손괴 등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의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24)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 (1992年) 10月 8日, p.5.

25)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 (1992年) 10月 8日, p.6.

②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있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제1조의 “환경오염”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약관기재의 시설 또는 설비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말한다. 이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첫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서 생긴 환경오염에 기인한 타인의 신체장애, 타인의 재물손괴 등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둘째, 오염정화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서 생긴 환경오염으로 피보험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오염정화비용의 지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 보험금의 내용

지급보험금의 내용은 ①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출을 요구받은 오염정화비용, ③ 응급수당, 호송에 요하는 비용 및 사전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지출된 손해방지경감비용, ④ 구상권보전비용, ⑤ 소송,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지출된 소송비용, ⑥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등이다.²⁶⁾ 지급보험금의 산정방식은 “지급보험금=(손해배상금+오염정화비용+응급비용+손해방지경감비용+구상권보전비용+소송비용+협력비용-면책금액)×손해보상비율”로 한다. 다만, 보험금은 보상한도액 이하로 한다.

(4) 보험기간과 보험사고와의 관계²⁷⁾

① 보험기간과 보험책임의 관계를 보면 동 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

②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처리기준이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방식이고 보험사고는 신체장애 및 재산손해의 발생임과 비교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26)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 (1992年) 10月 8日, p.6.

27)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 (1992年) 10月 8日, p.7.

은 보험사고의 처리기준이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방식이고, 따라서 보험 사고는 손해에 대한 최초청구시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일련의 배상청구에 있어서 배상청구는 배상청구시 또는 장소 및 배상청구자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 또는 관련된 환경오염에 기인하여 제기된 모든 배상청구를 말한다. 즉, 모든 배상청구는 최초에 배상청구를 하게된 때 전부 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 1) 신체장애, 2) 최초의 재물손해, 3) 후속배상청구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 이들 1), 2), 3)은 동일환경오염에 기인한 배상청구인 것이므로 하나의 배상청구로 보면, 배상청구시점에서 모든 배상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보상한도액 및 면책금액은 배상청구가 있었던 때의 보험계약조건이 적용된다.

④ 배상청구기간연장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종료후 연장기간 이내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된 경우 특약에 의해 보험기간종료 일에 당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특정연장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이 경우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원계약의 보험료와 동액이상으로 설정된다.

(5) 면책사유

일본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묻지 아니하고 다음 사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²⁸⁾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법인의 경우 그 이사, 임원포함),
- ②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단,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
- ④ 전쟁, 변란, 폭동, 소요 또는 노동쟁의,
- ⑤ 지진, 분화, 홍수, 고조 또는 해일,
- ⑥ 원자력반응 또는 원자핵의 붕괴(다면, 의학적, 과학적 또는 산업의 이용에 제공되는 원자핵반응 또는 원자핵의 붕괴에 의한 경우제외),
- ⑦ 산성비(눈, 안개 등 포함),
- ⑧ 피보험자에 대하여 행해진 금지된 청구 등을 담보되지 않는다.²⁹⁾

28) インシュアランス 平成 4年 (1992年) 10月 8日, p.8.

IV. 결론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여부

위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결과 그들도 과거에는 종합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오염사고를 부보하는 특별약관을 붙여서 보험 담보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손해를 부보하였지만, 20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점증하는 환경오염사고와 이에 의한 피해자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오염손해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1) 과거 종합배상책임보험에서는 부보할 수 없었던 점진적인 오염사고(gradual pollution)의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2)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 방식이 아닌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방식 또는 사고현재화기준(manifestation basis)방식으로 되어있어서 객관적 사고발생 사실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오염손해발생 인지시 또는 배상청구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3) 보험금 지급기준이 배상청구기준 방식 등으로 되어있다 보니 생기는 보험기간과 배상청구 제기시의 시차를 없애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장보고기간’을 규정하여 보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를 일정기간(보험기간종료 후 1년~3년) 동안 인정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4) 강제보험제도 내지는 재정증명제도와의 병행실시를 통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구제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이 발의되어 강제적인 책임보험(환경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법률안이 폐기되고 현재까지도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하에 장기 검토과정로만 남아있는 형편이다.

물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화하여 도입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제품원

29) 日本 AIU事業開發本部 商品開發室提供. 保險每日新聞 11999號, 12000號.

가를 높여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처럼 권리의식이 급신장되는 사회에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기업은 오히려 단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의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심지어 중국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있고 2015년에는 전 산업분야에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私見으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상품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대신 강제보험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대기업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책입안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논문발표일 : 2009. 12. 12.	심사일 : 2010. 11. 16.	제재확정일 : 2010. 11. 23.
-----------------------	---------------------	-----------------------

참고문헌

- 권혁대, “국내 손보사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기홍철, “환경오염사고의 피해구제와 기업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개발방향,” 「보험학회지」 제43집, 1994.
- 김영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보험법연구」 제1권, 1995.
- 서규석, “환경보호입법과 환경오염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1997.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95.
- 최상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고찰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충북대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하태웅, 「환경오염과 보험법」, 휘즈프레스, 2000.
- _____,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검토”, 「변호사」 제29집, 1999.
- _____,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미국법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_____,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요건과 효과,” 「보험법률」 제35호, 2000.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정례브리핑 자료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2009.4.15.
- 東京海上火災保険株式會社, 「環境リスクと環境法」, 有斐閣, 1996.
インシュアランス, 1992(平成 4年)
- Paul K.Freeman & Howard Kunreuther, *Managing Environmental Risk Through Insurance*, Kluwer, 1997.
- W.Breining, *Die Haftpflichtbranche bleibt interessant*, 21 Versicherungswirtschaft, 1991.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Park, Young Joon

Scientific development and pollution go hand in hand cannot be disputed.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in the coal chemical industry cost a lot of money for the recovery. International system is needed for the restitution.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insurance companies to resolve many businesses pay high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by adding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 in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CGL) policies, they cover claims arising from environmental accidents.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however, covers only "sudden and accid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oes not cover "gradual" pollution accident. So, chronic pollution accident is not covered by CGL.

At the end of 20th centuries,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EIL) insurance, which covers chronic pollution accident, emerge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Korea, the statutory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Draft) failed to pass the Korean Congress at 2000. But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cently trying to induc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as a kind of Green Insurance.

The author explains the character and legal aspects of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as well as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s cases and disputes on the legislation. Finally, the author insists to import compulsory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on Korea.

주 제 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종합배상책임보험,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 녹색보험,
강제보험

Key Words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 Green Insurance, Compulsory
Insurance